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보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공동발간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2.11.09

2021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95조 4,376억 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 급여비(공단 부담금)는 71조 5,569억 원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함. 노인(65세 이상) 진료비는 41조 3,829억 원으로 전체대비 43.4%를 차지했으며, 노인(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 509만 원임

2022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융위원회 | 2022.11.09

'22.10월중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 원 감소하여, 전월(△1.2조 원)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임. 금융당국은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 정상화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세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12.1일잠정 시행 예정) -

금융위원회 | 2022.11.10

금융위원회는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함. 주요 내용은 1.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2.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3.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 원 한도내에서 70%까지 LTV 우대 가능임

정규직 출산율 비정규직에 비해 1.89배 높아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2022.11.03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종사자 특성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혼인율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1.65배, 대기업 종사자가 중소기업의 1.43배 높고, 출산율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1.89배, 대기업 종사자가 중소기업의 1.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2022.11.01

현행법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 및 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보험사고 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약관 및 증권 청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2022.11.02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나 현재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되어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자금 지원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금액 규모, 기한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2.11.02

현행법은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보험료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관여할 필요가 있는바, 개정을 통해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2022.11.03

현행법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들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는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의원 등 10인

2022.11.04

최근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하여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허위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한바, 이 경우에도 운전면허의 취소·정지가 가능하여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의 취소·정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2022.11.07

최근 집중 폭우로 인해 반지하층 주택 등이 침수되면서 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였는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있는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자는 풍수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